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723

발의연월일 : 2020. 11. 25.

발 의 자:윤영덕·강득구·강민정

기동민 · 김승남 · 김승원

노웅래 • 민형배 • 박영순

송갑석 · 윤건영 · 이광재

이동주 · 이용빈 · 이형석

인재근 • 조오섭 • 진성준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 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원인 이사들을 제외한 학교 구성원들은 이사회의 소집사실을 이사회가 종료된 후에 알게 되거나 이사회 개최시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사회의 회의록이 공개되는 학교 홈페이지를 계속 확인하지 않는 이상 공시 기간 내에 회의록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음.

이에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 도록 함으로써 이사회의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7조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일자,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7條(理事會의	召集)	1	~ 4	第17條(理事會의 召集) ① ~ ④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학교법인이 운
				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
				지 등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